

시설공인 규정

개정 2019. 11. 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카누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인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공인제도 운영) ① 연맹은 국제카누연맹(이하 “ICF”라 한다)의 경기규칙에 의거한 규격품 사용을 제도화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운영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인제도를 운영한다.

② 공인제도 운영을 통해 외국산 경기 용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경기 용품의 생산을 촉진하여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내·외 경기대회 참가 및 훈련에 국산 경기용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③ 연맹 정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인과 관련하여 ICF의 공인규정을 벗어난 공인 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 업체의 제품 사용을 강요하거나 공인료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규정 제정) 연맹은 이 규정에 따라 카누 경기시설·장비와 관련된 공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시설·용품 공인 규정’(이하 “공인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시

설·용품 공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기시설·용품 공인 및 검정
2. 경기시설·용품의 타당성 검토
3. 경기시설·용품의 안전성 검토
4. 공인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심사
5. 공인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6. 외국산 경기용품 수입 승인 및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
7. 공인 약정 준수 여부 확인
8.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조언
9. 기타 카누 경기시설·용품의 공인과 관련된 업무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7명 내외(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의 위원은 경기인 출신, 공학·생산 분야 전문가, 인증 전문가, 법률가 등 전문 분야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경기시설·용품 공인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연맹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인 또는 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공인 심의

제11조(공인대상) 공인은 연맹의 경기시설(부대시설 포함) 및 경기용품
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기준) ① 연맹은 공인 심의를 위해 경기적합성, 품질, 안전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공인
대상에 대해서는 공인 대상 수의 제한 등 별도의 추가 조건을 두지 않고
공인하여야 한다.

② 연맹 공인 관련 기준은 ICF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ICF 기준과 상이한 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
및 사유를 ‘공인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연맹은 공인 심사신청을 받기 30일 전까지 공인을 위한 평가항목, 평
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실비, 공인료 부과 기준 등 세부사항을 연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④ 연맹은 대회 개최 30일 전에 시설 경기시설 및 경기용품 설치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고 용품의 선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시설계약체결은 위원회와 협
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13조(공인에 대한 제척) 연맹의 임·직원 및 그 친족이 임·직원으로 있
는 업체의 용품은 연맹으로부터 독점 공인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대회
공인의 제한을 받는다.

제14조(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공정한 공인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평가를 전문평가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② 평가방법은 서류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설비·용품 검사, 현장 테스트
평가 등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 공인) ① 위원회가 경기시설에 대해 공인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인을 승인하여야 한다.

1. 경기시설 및 부대시설의 제19조(공인기준) 1,2항 규정 적합 여부
2. 시공업체의 유사 경기시설 시공 실적
3. 시설 시공업체가 경기장 시설을 안정적으로 시공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등록 유무, 장비(레인 및 부이, 피니쉬타워, 모터보트 장비의 모든 것을 보유해야 한다.)보유, 사업 실적]
4. 시설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
5. 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 여부 등 선정 절차의 공정성

② 시설 공인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연맹과 공인수수료 입금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는 별지 제3호와 같다.

③ 경기장 시설설치 및 시공업체는 경기시설의 설계단계부터 연맹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대회 개시 3일전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2일전까지 공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6조(용품 공인) ① 위원회는 경기용품에 대해 공인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인을 승인하여야 한다.

1. 경기정의 제19조(공인기준) 3항 규정 적합 여부

② 국제대회, 전국규모카누대회를 주관하는 단체가 대회에서 사용되는 경기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기용품 결정 전 연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공인료) ① 연맹은 경기 시설 및 용품에 대한 공인료 기준표를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공인규정’의 별표로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설치 및 시공업체는 연맹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 백마강배 전국카누경기대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국가대표 선수 및 후보선수 선발전)의 시설에 대해 공인수수료를 공인지정 15일 이내에 연맹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당하며 향후 1년간 연맹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시설설치 및 시공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③ 제17조2항 대회 중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시설 계약을 체결한 공인 시설물 또한 공인수수료를 연맹에 납부한다.

④ 모든 전국규모대회의 공인수수료를 징수하는 시설물은 레인시설 계약금(수수료 포함금)의 5%를 공인수수료로 정한다.

⑤ 공인료는 공인을 위한 출장비 및 평가비 등 실비를 반영하여 책정하며 그 산출내역을 공인료 기준표에 적시하여야 한다.

⑥ 연맹은 공인료 수입에 대해서는 예산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집행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인기한) ① 시설에 대한 공인기한은 공인일자부터 해당대회 종료일로 한다.

② 용품에 대한 공인기한은 대회 10일전부터 대회종료일로 하며 연맹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공인기준) ① 경기장 시설 공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기준 및 규격

- 1) 경기장크기 : 길이(1,300M 이상), 폭(140M 이상), 수심(전 지역이 최소 2M 이상)

- 2) 레인 : 각 레인의 넓이는 9M로 9개 레인을 직선으로 하며 각 레인은 평행이어야 한다. 레인은 부이나 부표로 표시하여야 하며 코스 길이를 따라 설치한 부이의 간격은 25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이나 부표의 크기는 둘레가 58cm - 60cm로 한다.
- 3) 출발선과 결승선은 코스와 직각이어야 하며, 결승선 마지막 부이에는 1번에서 9번까지 번호표시가 되어있어야 하고 결승 심판석에서 분명하게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번호표 된 부이는 선수가 통과 할 때 선수의 우측에 위치하여야 하며 선수에게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동 부이는 결승선으로부터 1M 이내로 가까이, 또는 2M이상 멀리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출발심판석과 결승심판석은 출발선이나 결승선에 가까이 위치하여야 하며, 1-9라인이 한 눈에 들어올수 있도록 수면에서 2m이상 높여서 심판석을 설치한다. 심판석에는 수직의 철선을 세워 맞은편 기준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 5) 결승선은 고정이며 결승선으로부터 200M, 500M, 1000M 지점이 출발선이 된다.
- 6) 경기장에는 출정폰툰, 퇴정폰툰, 수상자 퇴정폰툰이 설치되어야 하며 수상자 퇴정폰툰은 시상대와 가까이 위치하여야 한다.
- 7) 레인시설을 위해 부이를 매다는 수중 철선은 최소 5mm 이상의 스테인레스 강선으로 하며 최소 10개의 와이어 조절장치로 가로 세로 부이를 맞춘다.
- 8) 출발지역에는 출발선 전후방 100M까지 출발심판의 방송이 가능한 확성기 장치가 되어야한다.

9) 거리표지판은 수면 또는 수상에 설치 할 수 있으며 흰색 바탕에 검정색 고딕 글자로 하며 경기장 전면에서 볼 때 45° 양면 인쇄하여 경기진행자 및 선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며 글자크기는 글자당 75cm×90cm 내외로 한다. 다만 상기 기준 및 구역은 국내경기 시 경기장의 입지조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심의를 거쳐 경기장 시설을 조정할 수 있다.(별첨 제4호 참조)

② 부대시설 공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검정을 위하여 가로13m 세로6m의 방풍 검정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 2) 경기정보관을 위한 정고, 다단식 목마, 개별 목마가 제공되어야 한다.
- 3) 선수의 휴식을 위한 라커룸이나 간이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4) 경기 후 세척에 필요한 충분한 샤워시설이 있어야 한다.
- 5) 경기장 부근은 선수의 부상방지과 안전확보를 위해 이동로가 깨끗이 정비되고 바닥이 평탄해야 한다.
- 6) 경기진행에 필요한 진행부 방송, 전화, 복사기, FAX 등의 장비와 시설이 있어야 한다.

③ 경기용품 공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2. 경기정 규격

1) 경기정의 규격은 ICF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단위	K-1	K-2	K-4	C-1	C-2	C-4
배의최대길이	CM	520	650	1100	520	650	900
배의최소무게	KG	12	18	30	14	20	30

2) 경기정과 부속품 및 경기복장에 대한 광고물은 선수 식별과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허용되나 제품의 상표나 로고는

9cm²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담배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카약(K)구조

경기정의 재질은 어떤 것이든 무방하다. 정체의 단면과 종선은 볼록하여야 하고, 항상 휘어지지 않아야 하며 중단된 곳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에는 방향타를 부착시킬 수 있고 고물에 부착할 경우 방향타의 두께는 K-1, K-2에 있어서는 1.0mm, K-4는 1.2mm 이내로 한다.

4) 카누(C)구조

경기정의 재질은 어떤 것이든 무방하다. 선체의 단면과 종선은 볼록하여야 하고, 항상 휘어지지 않아야 하고 중단된 곳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체는 배 길이의 축 선상에서 대칭이어야 하고, 조타키나 방향유도 장치는 부착해서는 안된다. 배의 용골은 어떤 경우에도 직선으로 전 길이에 미쳐야 하며, 선체 아래로 30mm 이상 내려오도록 장치할 수 없다. C-1은 이물에서 150cm 이상, 고물에서 75m 이상의 부분은 무개(無蓋)이어야 한다. 무개부분의 측정은 이물 및 고물의 최외단에서 각각 전후 갑판의 최장부분으로 한다. C-2는 무개이어야 하고 무개부분은 최소한 295cm 이상이어야 한다.

5) 경기정 측정

정의 길이는 이물과 고물의 최외단을 측정한다. 이물, 고물에 보호장치가 있을 때는 그것을 포함하여 측정한다. 단, 고물에 부착된 카약의 키는 측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의 너비는 배의 가장 넓은 부분을 측정한다.

6) 검정 및 장비검사

검정원은 경기정 및 선수장비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2대의 공인된 무게 및 치수 측정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표준

검사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카약(K)

카약의 계량은 키 및 조타장치와 좌석 이외에 떼어낼 수 있는 모든 부품을 떼어내고 행한다.

나) 카누(C)

카누의 계량시에는 가로지름대등 고정물 이외의 모든 부품은 제거하여야 하며 고정된 무릎판 및 수분 흡수 부력재는 계량시에 완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7) 정의 넘버

모든 카누는 레인 넘버를 나타내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의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표시판은 모든 경기정의 후갑판의 중심선상에 부착하며, 그 크기는 18X20cm로 한다.

④ 피니쉬 계측장비에 대한 공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3. 계측장비는 1000m 경기의 750m, 500m, 250m, 500m 경기의 250m, 200m 경기의 100m 지점에 구간기록을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결과 기록지는 국제대회 결과 기록지에 준하여 영문으로 제작 배포한다.

제4장 사후 관리

제20조(결과 공개) 연맹은 공인의 결과에 대해 이사회 및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인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별지 제 2호서식에 의거하여 회원종목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인 대상 시설 및 용품 목록
2. 공인 기간

3. 공인 시설 및 용품 생산업체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사무소 주소

4. 공인료

제21조(시정요구) ① 연맹은 공인 후에도 해당 시설·용품이 관련 규정 및 규격에 위배되거나 그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인 후 시설 및 용품의 하자로 인해 경기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거나 문제점 보완에 대한 연맹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공인기간 중이라도 연맹은 공인 대상에 대해 공인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시공업체는 연맹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규정의 해석)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공인제도 운영규정(이하 '체육회 공인제도 운영규정')은 연맹의 '공인규정'에 우선하며, 연맹의 '공인규정'을 '체육회 공인제도 운영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체육회 공인제도 운영규정'과 상이할 경우에는 '체육회 공인제도 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연맹이 '체육회 공인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카누와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맹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개선요구) 체육회는 공인제도 운영과 관련해 연맹에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규정의 제·개정) ① 연맹이 ‘공인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ICF의 공인 관련 규정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로부터 승인받은 ‘공인규정’은 연맹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2016. 6. 16.)

제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공인을 받아 계약기간 중에 있는 업체 및 품목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공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부 칙(2019. 11. 6.)

제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공인을 받아 계약기간 중에 있는 업체 및 품목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공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인료 기준표

▶ 공인료 기준 의결 회의: 제2차 이사회(2017. 5. 11.)

▶ 공인료 기준표(대회별)

공인품목	공인료 (단위: 원)	공인료 산출내역 ^{주)}	비 고
시설	1,7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비 40,000원 ▪ 출장비 160,000원 ▪ 검사비 1,350,000원 ▪ 기타 숙박비 200,000원 	공인료는 계약금액의 5%로 공인료 산출내역 변동 가능

주: 단체에 따라 산출내역의 항목 추가 가능

▶ 공인료 기준 의결 회의: 제2차 이사회(2017. 5. 11.)

▶ 공인료 산출 세부기준(업체별)

시설공 인품목	기간 / 공인료 (단위: 원)	공인료 산출내역 ^{주)}	비 고
시설	1년 / 5,000,000원	① 1회 대회 당 시설 지출 평균 비용 40,000,000원 ② 1년 기준으로 산출 기준 40,000,000원 × 2(1년간 대회 개최 가능 횟수) = 80,000,000원 ③ 1회 대회 공인비 산출 기준 80,000,000원 × 6.5% = 5,200,000원(대회 1회)	

※ 단, 공인업체 수에 따라 공인료가 달라질 수 있음.

※ 경기진행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시 시설공인위원회에서 공인을 취소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2000년도 공인 결과

- ▶ 공인 결과 의결 회의: 제○차 ○○○회의(2000. ○. ○○.)
- ▶ 공인 내역

공인품목	식별정보 ¹⁾	생산업체/관리주체 ²⁾	공인기간	공인료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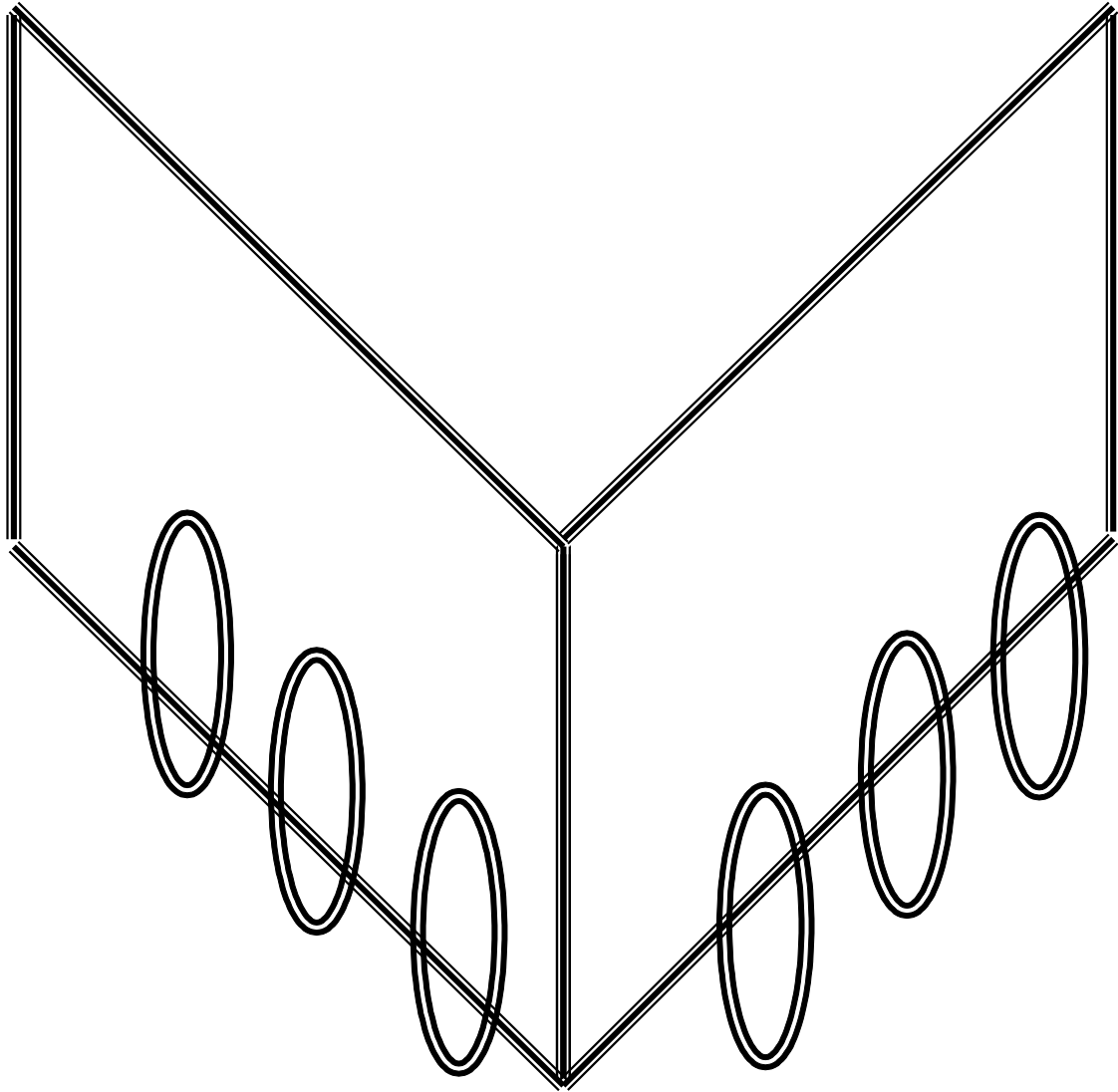
주: 1. 식별정보는, 용품의 경우에는 제품 모델명 및 모델번호를 기입하고,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명칭 및 주소를 적습니다.
2. 용품의 경우 생산업체에 대해 적는데 “업체명(대표자명)”을 기입하고, 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에 대해 적는데 “관리주체단체명(단체장명)”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공인수수료 입금 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사명 (대회명)				
공인수수료	일금 _____ 원정(₩ _____) (계약금액의 10%)			
대한카누연맹 (계약자)	주 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테니스경기장 310호		
	연락처	02-420-4282	FAX	02-420-4283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215-82-05296
	시설이사	(인)		
	계좌 (은행명)	026-01-174904 (수협은행), 예금주 : 대한카누연맹		
위 규정에 의거 대회직후 15일 이내에 위 계약자(대한카누연맹)계좌로 공인료를 지불하겠습니다.				
공사업체 (계약자)	주 소			
	상 호		전화 번호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4호 서식]

거리표지판 모형



바탕색 : 백색

글자색 : 검정색

글자크기 : 가로75cm×세로90cm